

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(제15조 관련)

1. 표시내용

- 가. 지나친 구매행위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문구
- 나. 소액구매 또는 건전구매를 유도하는 문구
- 다. 중독 및 과몰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

2. 표시방법

- 가.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제1호 각 목의 표시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되, 승자투표권의 앞·뒷면에 각각 다른 내용으로 표기해야 한다.
- 나. 사각형의 크기는 승자투표권은 앞·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고, 스티커(붙임딱지)·포스터·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
(단위: 밀리미터)

광 고 면 적	표 준 규 격	사각형의 크기
B4 초과	364×257 초과	112×25 초과
B4	364×257	112×25
A4	297×210	94×20
B5	257×182	80×17.5
A5	210×148	62×15
A5 미만	210×148 미만	62×15 미만

- 다. 경고문구의 글씨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라.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승자투표권 또는 광고의 특성에 맞게 하되, 표시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색(補色) 관계에 있는 색을 사용하여 한다.
- 마. 표시 위치는 승자투표권은 앞·뒷면 하단으로 하고, 스티커·포스터·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.